단기매매차익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6. 2009가합8142]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지엔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준)

【피고】

【변론종결】2009. 8. 26.

【주문】

1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류·피혁류·잡화류의 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증권거래법이라 한다)상의 코스닥상장법인이고, 피고는 1999. 10. 8.부터 2002. 10. 8.까지, 2003. 3. 20.부터 2007. 11. 6.까지 각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피고의 주식 매수

피고는 2007. 1. 9. 장내에서 원고 발행 보통주 7,700주를 주당 3,616원에 매수하였고, 2007. 1. 24. 장외에서 소외 1로 부터 원고 발행 보통주 823,773주, 소외 1의 처 소외 5로부터 위 보통주 888,808주, 소외 1의 아들 소외 6으로부터 위 보통주 617,830주 합계 2,330,411주를 주당 5,149원에 매수(다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에는 2007. 2. 8. 보유 내역이 변동된 것으로 보고되었다)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각서 및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1) 한편, 피고는 2007. 1. 24. 소외 주식회사 더블류지에프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는 원고 발행 주식 일부와 원고의 주주인 소외 1, 5, 6으로부터 양수하는 주식 2,330,411주 합계 3,144,037주를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 발행 구주인수 및 원고의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주식양수자금 대여)

(1) 을(피고)은 갑(소외 회사)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2007. 1. 24.부터 29. 사이, 혹은 그 이전에 원고의 주주 소외 1 등으로부터 총 2,330,411주를 양수하는 계약을 별첨 1의 주식양도계약서의 양식을 이용하여 체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다.

(2) (이전 생략) 갑은 을로부터 위 계약서 원본을 제공받은 후 7일 이내 혹은 2007. 2. 5. 이전에(2. 9.까지 연기 가능) 을 과 위 주식양수대금 12,000,000,000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별첨 2의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체결한 후 갑 혹은 갑이 지정한 자가 위 자금을 을에게 대여하도록 한다.

제2조 (담보 제공 및 행위제한)

(1) 을은 제1조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서 위 주식양수절차가 종료된 즉시, 위 1조에 따라 인수한 주식 2,330,411주와 을이 보유한 주식 일부의 합계 3,144,037주를 갑에게 제공하고 질권을 설정한다.

제3조 (주식의 양도 및 의결권 위임)

(1) 갑은 2007. 8. 13. 이후 8. 18. 이내의 기간 중에 을로부터 원고 주식 총 3,144,037주를 총 25,000,000,000원(주당 7,952원)에 양수한다.

갑과 을은 별첨 3의 양식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단, 소외 3, 4 2인의 보유 주식을 양도주식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의 양도주식 수에서 차감한다.
- (3) 갑이 을에게 대여한 금 12,000,000,000원은 제1항의 주식매매의 계약금 조로 상계한다.
- 2)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7. 8. 14.자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가 2007. 8. 14. 소외 회사에 원고 발행 주식 2,949,772주를 매도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대금 23,455,291,000원(주당 약 7,951.56원)을 지급받되, 그 중 12,000,000,000원은 소외 회사가 기존에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매매계약'이라 한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3) 또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피고가 2007. 8. 14. 장외에서 소외 회사에게 원고 발행 보통주 3,257,472주를 주당 7,952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 4) 피고는 2007. 8, 14, 원고 발행 주식 2,949,772주가 표창된 주권을 소외 회사에 교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류·피혁류·잡화류의 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증권거래법이라 한다)상의 코스닥상장법인이고, 피고는 1999. 10. 8.부터 2002. 10. 8.까지, 2003. 3. 20.부터 2007. 11. 6.까지 각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피고의 주식 매수

피고는 2007. 1. 9. 장내에서 원고 발행 보통주 7,700주를 주당 3,616원에 매수하였고, 2007. 1. 24. 장외에서 소외 1로 부터 원고 발행 보통주 823,773주, 소외 1의 처 소외 5로부터 위 보통주 888,808주, 소외 1의 아들 소외 6으로부터 위 보통주 617,830주 합계 2,330,411주를 주당 5,149원에 매수(다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에는 2007. 2. 8. 보유 내역이 변동된 것으로 보고되었다)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각서 및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1) 한편, 피고는 2007. 1. 24. 소외 주식회사 더블류지에프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는 원고 발행 주식 일부와 원고의 주주인 소외 1, 5, 6으로부터 양수하는 주식 2,330,411주 합계 3,144,037주를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 발행 구주인수 및 원고의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주식양수자금 대여)

- (1) 을(피고)은 갑(소외 회사)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2007. 1. 24.부터 29. 사이, 혹은 그 이전에 원고의 주주 소외 1 등으로부터 총 2,330,411주를 양수하는 계약을 별첨 1의 주식양도계약서의 양식을 이용하여 체결한다.
- (2) (이전 생략) 갑은 을로부터 위 계약서 원본을 제공받은 후 7일 이내 혹은 2007. 2. 5. 이전에(2. 9.까지 연기 가능) 을 과 위 주식양수대금 12,000,000,000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별첨 2의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체결한 후 갑 혹은 갑이 지정한 자가 위 자금을 을에게 대여하도록 한다.

제2조 (담보 제공 및 행위제한)

(1) 을은 제1조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서 위 주식양수절차가 종료된 즉시, 위 1조에 따라 인수한 주식 2,330,411주와 을이 보유한 주식 일부의 합계 3,144,037주를 갑에게 제공하고 질권을 설정한다.

제3조 (주식의 양도 및 의결권 위임)

(1) 갑은 2007. 8. 13. 이후 8. 18. 이내의 기간 중에 을로부터 원고 주식 총 3,144,037주를 총 25,000,000,000원(주당 7.952원)에 양수한다.

갑과 을은 별첨 3의 양식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단, 소외 3, 4 2인의 보유 주식을 양도주식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의 양도주식 수에서 차감한다.
- (3) 갑이 을에게 대여한 금 12,000,000,000원은 제1항의 주식매매의 계약금 조로 상계한다.
- 2)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7. 8. 14.자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가 2007. 8. 14. 소외 회사에 원고 발행 주식 2,949,772주를 매도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대금 23,455,291,000원(주당 약 7,951.56원)을 지급받되, 그 중 12,000,000,000원은 소외 회사가 기존에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매매계약'이라 한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3) 또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피고가 2007. 8. 14. 장외에서 소외 회사에게 원고 발행 보통주 3,257,472주를 주당 7,952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 4) 피고는 2007. 8. 14. 원고 발행 주식 2,949,772주가 표창된 주권을 소외 회사에 교부하였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